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무역안보 24
Trade Security
www.kosti.or.kr
kosti 무역안보관리원
2026년 8월 14일
[2026-40]

美, 무인항공기(드론) 수출통제 추가 완화

무역안보관리원 정책연구팀 I **김지혜** 선임연구원 (jihea1004@kosti.or.kr)

▸ 개요

- '26.8.13. 미 상무부 BIS는 무인항공기(UAV) 및 관련 소프트웨어·기술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추가 완화하는 최종규칙(Final Rule) 발표

  * 「Streamlining Export Controls for Drone Exports」, Federal Register 시행일: '26.8.13.

  – 금번 조치는 '26.1월 드론 통제 완화의 잠정최종규칙(IFR)[1]을 유지하며, 적용대상 및 완화범위를 추가하는 후속 조치

▸ 주요 내용

- **(경과)** 행정명령(E.O.14307)으로 UAV 동맹국向 수출 신속화('25.6) → 잠정최종규칙(IFR*) 시행('26.1) → 최종규칙(FR) 시행(금번)

  * IFR(Interim Final Rule)은 시행 후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최종 규칙화(Final Rule) 됨. IFR, FR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시행되면 효력을 발휘함

- **(개정 취지)** 60분 이상 비행 가능한 드론 자료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미국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고성능 UAV 통제에 집중하고자 함

- **(개정 내용)** 저·고성능 기준 체공시간을 3시간(기존 1시간)으로 상향하고, 저성능 상용 UAV의 경우 전세계向(기존 A:1 한정) 수출시 허가 불요

〈 드론 통제 완화 잠정최종규칙(IFR)과 최종규칙(FR) 비교 〉

구분(통제번호)	26년 1월 잠정최종규칙	26년 8월 최종규칙
저성능 상용 UAV (9A012.a.1)	바세나르 체제국(A:1)으로 수출시 허가 불요	전세계(제재국 제외)로 수출시 허가 불요 – 체공시간 변경(30분~1시간 → 3시간 미만) ※ 단, 군사 최종용도·최종사용자 통제 신규 적용
고성능 비군사용 UAV (9A012, 9A120)	美 파트너국(A:5)으로 수출시 허가 예외(STA) 적용가능	좌동
군용 UAV (9A610.a)		USML 미열거 군용 UAV의 분류 명확화

1) [무역안보24 Report 제2026-6호] 美, 무인항공기(드론) 수출통제 일부 완화 (무역안보관리원, 2026.1.21.)

▸ 세부 내용

① 저성능 상용 UAV(통제번호 9A012.a.1) 전세계 수출시 허가 불요

* 단, 제재대상국은 제외되며 최종용도·최종사용자 통제(744.21) 준수 필요.
또한, 사거리 300km 이상이거나 9A120 요건 충족시 MT1 통제 요건 지속

- **(통제 완화)** 체공시간 기준의 증가(3시간 미만) 및 돌풍 기준 삭제
  - 1월체공시간 30분이상 1시간 미만이며(and) 돌풍 46.3km/h 이상에서 이륙·안정 통제비행 가능 → 8월체공시간 3시간 미만
- **(대상국 확대)** 바세나르 체제국(A:1)向 수출 시만 허가가 불요했으나, 전세계向(제재국 제외) 수출 시 허가 불요 * 국가안보(NS) 통제사유 삭제로 인함
  - 9A012.a.1 관련 SW·기술(9D001, 9D002, 9D004, 9E001)인 상용 UAV 운용 SW, 펌웨어 업데이트 등도 대부분 지역向* 허가 불요함 *단 MT1 대상 UAV 관련 9E001 기술은 MT1 사유로 통제되는 국가 확인 필요

② 고성능 비군사용 UAV(통제번호 9A012.a.2) 통제 범위 축소

- 고성능 UAV(9A012.a.2) 체공시간이 1월 1시간 → 8월 3시간 이상으로 변경

③ 군용 UAV(통제번호 9A610.a) 분류 명확화

- 美 군용품목(USML)에 미열거된 군용 UAV를 9A610.a(600시리즈)로 분류
  - 군용 UAV 저민감 부품(9A610.y.33) 통제번호의 별도 신설
- 600시리즈 품목은 STA(전략적 무역허가) 허가예외 사용이 제한적이나, 금번 개정으로 A:5 국가向 STA 허가예외 사용 가능

〈 (참고) 허가 예외 STA 적용 대상 정리 〉

통제번호	STA 적용 대상	조건
9A012	미사일기술(MT) 사유로 통제되는 UAV 또는 무인비행선	1. A:5 국가그룹 대상이어야 하며(and) 2. 500kg을 300km 이상으로 운반할 수 없어야 함
9A120		
9A610		1,2 조건 만족 ※ 9A610.a는 BIS의 STA 적격성 인정 필요

▶ 결론 및 시사점

- 금번 최종규칙은 상용 UAV를 A국가向에서 확대하여 전세계 대상으로 통제를 완화하였으며 최종용도·최종사용자 통제에 집중

- 미국산 UAV의 한국(A:5 국가) 向 수출 관련 허가 부담이 추가 완화

  - 고성능 UAV(9A012, 9A120) 및 군용 UAV(9A610.a): 허가 예외 STA 적용*
  - 저성능 UAV(9A012.a.1)**: 허가 불요

  * 단, 500kg을 300km 이상 운반할 수 없어야 함

  ** 단, 사거리 300km 이상이거나 9A120 요건 충족시 MT1 통제 요건 지속

붙임1. UAV 통제 기준 1부
2. UAV 통제 사유 1부. 끝.

Kosti 무역안보관리원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붙임 1 UAV 통제 기준(§774 부록1)

통제번호 (ECCN)	상세 통제 기준 (§774 부록1 원문 참조 必)
9A012	운용자(operator)[2]의 직접적인 자연시계(natural vision)[3] 밖에서 통제비행하도록 설계된 UAV 또는 무인비행선으로서 a.1~a.5 중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9A012.a.1	최대 체공시간[4]이 **3시간 미만**인 UAV 또는 무인비행선
9A012.a.2	최대 체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UAV 또는 무인비행선
9A012.a.3	ECCN 6A003.b.3, 6A003.b.4.b 또는 6A008.d~h에 규정된 장비를 탑재한 UAV 또는 무인비행선
9A012.a.4	ECCN 6A005에 규정된 장비를 탑재한 UAV 또는 무인비행선
9A012.a.5	ECCN 7A001, 7A002, 7A003 또는 7A005에 규정된 가속도계 또는 자이로를 사용하는 관성측정장비·시스템을 탑재한 UAV 또는 무인비행선
9A012.b.3	유인 항공기 또는 유인 비행선을 9A012.a에서 통제되는 UAV 또는 무인비행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 또는 구성품
9A012.b.4	고도 15,240미터(50,000피트) 초과에서 UAV 또는 무인비행선을 추진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공기흡입식 왕복동(reciprocating) 또는 회전 내연기관
9A120.a.1	자율 비행제어·항법 기능을 가진 완전한 UAV
9A120.a.2	운용자의 직접 시야 밖 통제비행 능력을 가진 완전한 UAV
9A120.b.1	20리터 초과 용량의 에어로졸(aerosol) 살포 시스템을 가진 완전한 UAV
9A120.b.2	20리터 초과 용량의 에어로졸(aerosol) 살포 시스템을 포함하도록(incorporate) 설계되거나 개조된 UAV
9A610.a	USML VIII(a)에 열거되지 않은 항공기 중 군사용으로 "특별히 설계(specially designed)"된 군용 항공기. UAV 및 원격조종비행체(RPV) 포함
9A610.y.33	9A610.a UAV·RPV용 브래킷, 운반 케이스, 컨트롤러, 케이블·어댑터, 충전기, 도크, 마운트, 프로펠러, 프로펠러 시스템 및 프로펠러 블레이드

1. 9A012.b.1, 9A012.b.2 는 현재 삭제되어 통제품목 없음
2. 종전 9A012.a.1의 "30분 이상~1시간 미만 + 돌풍 46.3km/h(25 knots) 이상" 요건은 삭제되고, 금번 개정으로 "3시간 미만" 기준으로 변경
3. 9A120의 상세 통제 기준은 금번 8월 최종규칙에서 변경되지 않음

2) 운용자(operator)란 UAV 또는 무인 비행선 비행을 개시하거나 명령하는 사람을 의미
3) 자연시계(natural vision)는 교정렌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인간의 시각을 의미
4) 체공시간(endurance)은 해수면에서 무풍인 ISA 조건(ISO 2533:1975) 하에서 계산

붙임 2 UAV 통제 사유 (§774 부록1)

통제번호	통제 사유	세부 사항 (§774 부록1 원문 참조 必)
9A012	NS1	9A012.a.1를 제외한 9A012 전체 항목에 적용
	MT1	탑재량과 관계없이 최대 사거리 300km 이상인 무인항공기(UAV)·원격조종비행체(RPV), 그리고 9A120 요건을 충족하는 UAV에 적용
	AT1	9A012 전체 항목에 적용
9A120	MT1 AT1	9A120 전체 항목에 적용
9A610	NS1 RS1	원칙적으로 전체에 적용하되 아래의 경우는 제외 - 9A610.b, - 9A610.b로 통제되는 항공기용 9A610.x로 통제되는 부품 및 구성품 - 9A610.y는 제외
	RS	9A610.y 품목은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 대상 별도 RS 통제(742.6(a)(7) 참고)
	MT1	9A610.t·u·v·w 및 9A610.a 중 최대 사거리 300km 이상(탑재량 무관)인 무인항공기(UAV)·원격조종비행체(RPV) 적용
	AT1	9A610 전체 항목에 적용
	UN	9A610.y를 제외한 전체 항목에 적용

- NS1: 국가안보 사유 전지역(호주,캐나다,영국 제외) (재)수출 통제
- MT1: 미사일 확산 방지 사유 전지역(호주,캐나다,영국 제외) (재)수출 통제
- AT1: 반테러 사유로 이란,북한,시리아 (재)수출 통제
- RS1: 지역안정 사유로 전지역(호주,캐나다,영국 제외) (재)수출 통제
- RS: Country Chart로 판단하지 않는 지역안정 통제
- UN: 유엔안보리 무기 금수국(북한, 소말리아, 수단, 북한, 이란 등) 대상 통제